

5.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4월 1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- 상정일자 :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4월 30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)

□ 제안이유

- 제10차 소방력 보장 5개년('18년 ~ '22년) 계획에 따라 진압, 구조, 구급 등 부족한 소방 현장 활동인력을 충원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현장중심의 소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
- 달성군 옥포택지 지구 내 주거단지 입주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 소방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옥포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

- 부족한 소방인력 배치 및 일부 기능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.

□ 주요내용

- 소방공무원 정원을 2,513명에서 2,631명으로 118명을 증원 조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 정원도 5,930명에서 6,048명으로 조정하였음.
-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소방령 1명을 증원하고, 소방경 이하 실무인력 117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,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, 구급활동 인력 등 현장 활동 부족인력을 충원하고, 소방학교 및 강북소방서 등 소방청사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청사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음.

3. 검토의견 요지 (보고자 : 광영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

- ▶ 지역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 등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(행안부령) 및 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」(훈령) 적용 시 부족한 소방인력 중 「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(방침, '17.12.28.)」에 따라 2019년에는 118명을 증원하고, 정원관리 기관별,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[연도별 소방인력 충원계획(안)]

구 분		계	19년	20년	21년	22년	23년이후	
총 계		693	118	71	72	74	358	
부 족 인 력	소 계	311	73	65	44	12	117	
	진압(센터,지역)	136	30	48	27	3	28	
	구 급	46	12				34	
	구 조	45	12	3	3		27	
	특수구조단(구조,항공)	27	4	5	5	3	10	
	상 황 실	38	12	6	6	3	11	
	체 험 관	19	3	3	3	3	7	
	소 방 서	소 계	109	20	6	6	3	74
		특별조사	14	12				2
		안전교육	9					9
		현장안전점검						
		보건안전	24	8	6	6	3	1
기 타		62					62	
관 서 신 설		273	25		22	59	167	
			옥포, 침산(구급)		가창	학교, 신천	강북, 스마트, 연경	

○ 주요 증원 내역은

- ▶ 증원 인력은 총 118명으로, 옥포안전센터 및 침산구급대 신설 25명, 소방특별조사팀 신설 및 보강 충원 12명, 외곽 119안전센터 진압인력 보강 30명, 119구급·구조대 인력 보강 24명, 소방공무원 안전사고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8명과 소방본부의 체험관·상황실·항공대 인력 보강 19명으로서 대부분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며,

- ▶ 직급별로도 현장 대응 인력인 소방령 이하 118명을 증원하여 외곽 안전센터 현장 출동 시 7인 탑승(펌프차 5명, 탱크차 2명/현재 평균 5.8명)과 구조·구급대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였음.

○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는

- ▶ 이번 소방직 118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2019년 기준 40억 2,3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나, 2019년 소방직 기준 인건비⁶⁾와 2019년 소방직 인건비 집행 예상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, 정원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▶ 그러나,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575명의 소방인력 증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, 지난해 10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전국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계획에 따른 재정분담 관련 합의⁷⁾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6) 기준인건비 관련

- ① '19년 소방직 기준인건비 : 209,562,945천원(1인 79,651천원)
- ② '19년 인건비 집행예상액 : 184,247,968천원(집행잔액 25,314,977천원)
* 집행잔액 : '19년 인건비 예산편성액(184,709,743천원) X '18년 예산집행률(99.75%)
- ③ 기준인건비 집행잔액(25,314,977천원) » 인건비 추가 소요액(4,022,744천원)

7) 재정관련 합의안('18.10.30.)

- ① (인력충원)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차질 없이 충원
- ② (재원조달) 담배개별소비세의 25%('19년 15%, '20년 10%) 지원, '21년 이후 인건비는 추후 논의
※ 2018년 담배개별소비세(2조 865억원) 기준 : '19년 3,129억원, '20년 5,216억원
- ③ (교부방법) 소방안전교부세 활용
- ④ (관계부처) 국무총리실 주재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소방청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<p>○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 조달계획은?</p> <p>○ 인건비 외 소방장비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있을 것인데?</p>		<p>○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, 국가직 전환시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. 재원은 담배개별소비세를 45%까지 확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확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, 증원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없을 것임.</p> <p>○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취지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역별 소방장비의 불균형 보완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,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.</p>	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 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